

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4나15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4나150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472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B종교단체의 C회중(교회)

변론 종결 2016. 4. 5.

판결 선고 2016. 5.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472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ㄹ 대 325m²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참조).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대 563.5m²(이하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에 합병된 안산시 단원구 E 대 3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합병 후 토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를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합병 전의 구 지번 및 지적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고 있을 뿐(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평가 또한 합병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보정을 아니 하고,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합병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138,62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577, 서울고등법원 2013나80667, 대법원 2014다74698)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한

판사조실

판사김새미